

## 수원지방검찰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청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3. 검찰시민위원회 활동, 위원 임기, 자격 등 관련 사항

-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필요시 검사로부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기타 자료를 토대로 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함

※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 필요없음

- 위원의 임기는 1년(2014. 10. 25. ~ 2015. 10. 24.), 1회 연임 가능
-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 및 균형감을 가진 일반 시민이면 모두 위원 자격이 있음. 다만, 변호사, 법무사, 정무직 공무원, 경찰,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함

4. 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나 일반시민 중 위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후보자를 1인 이상 아래 양식에 따라 추천하여 2014. 9. 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후보자 중 심사를 거쳐 29명의 시민위원 선정 예정).

※ 후보자의 약력사항도 첨부하여 팩스(031-210-4611) 혹은 이메일(duck7210@spo.go.kr)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이덕희수사관(전화: 031-210-4276)

- 아 래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붙임 : 1. 대검예규 제644호 「경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1부.  
 2. 개인정보조치 동의서(양식) 1부. 끝.

### 수원지방경찰청 검



수신자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오산시장,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대학교총장, 경기대학교총장, 단국대학교총장, 수원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삼성전자(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 화성 기아자동차(주), (주)한미약품(화성공단), 한국전력기술, SK네트웍스,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장, 경기도의사회장, 경기도 치과의사회장, 경기도 약사회장, 경기도 한의사회장, 경기기독교총연합회장,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장, 대한불교조계종제2교구본사, 전주교 수원교구장, 경기일보사장, 경인일보사장, 중부일보사장, 경기방송사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장, 수원YMCA이사장, 수원YWCA이사장, 참여연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경기도학생상당자원봉사자회장,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장,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경기도 사회복지사업회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 용인가정상담센터장, 화성가정폭력상담소장, 수원여성의전화회장, 생명의전화센터장(수원, 용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경기도학원연합회장, 수원시학원연합회장, 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장, 씨티은행 수원중앙지점, KT&G 경기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KT 수도권광남고객본부

검찰서기 이석희

검사 김가람

공안부장 최태원

2차장검사 차경환

전결09/11

1차장검사 김영진

업조사

시행 공안부-2005 (2014.09.11.)

접수

우 443-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suwon.dpo.go.kr

전화 031-210-4276

전송 031-210-4615

/duck7210@spo.go.kr

/비공개(5,6)

